

8.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

(1) 목 적

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이 직접 연구 개발하고, 이를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함.

(2) 지원대상 분야

- 농업인(단체)이 직접 참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
 - 농업용 기자재 개발,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
 - 중앙단위 시험·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
 -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충기술 개발과제
 - 사업목적에 부합되고, 저 비용으로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
 - 과제분류
 - 채소, 과수, 화훼, 특용작물, 축산, 농기계, 가공, 식량작물, 환경농업 등 연구주제별 분류
- ※ 2008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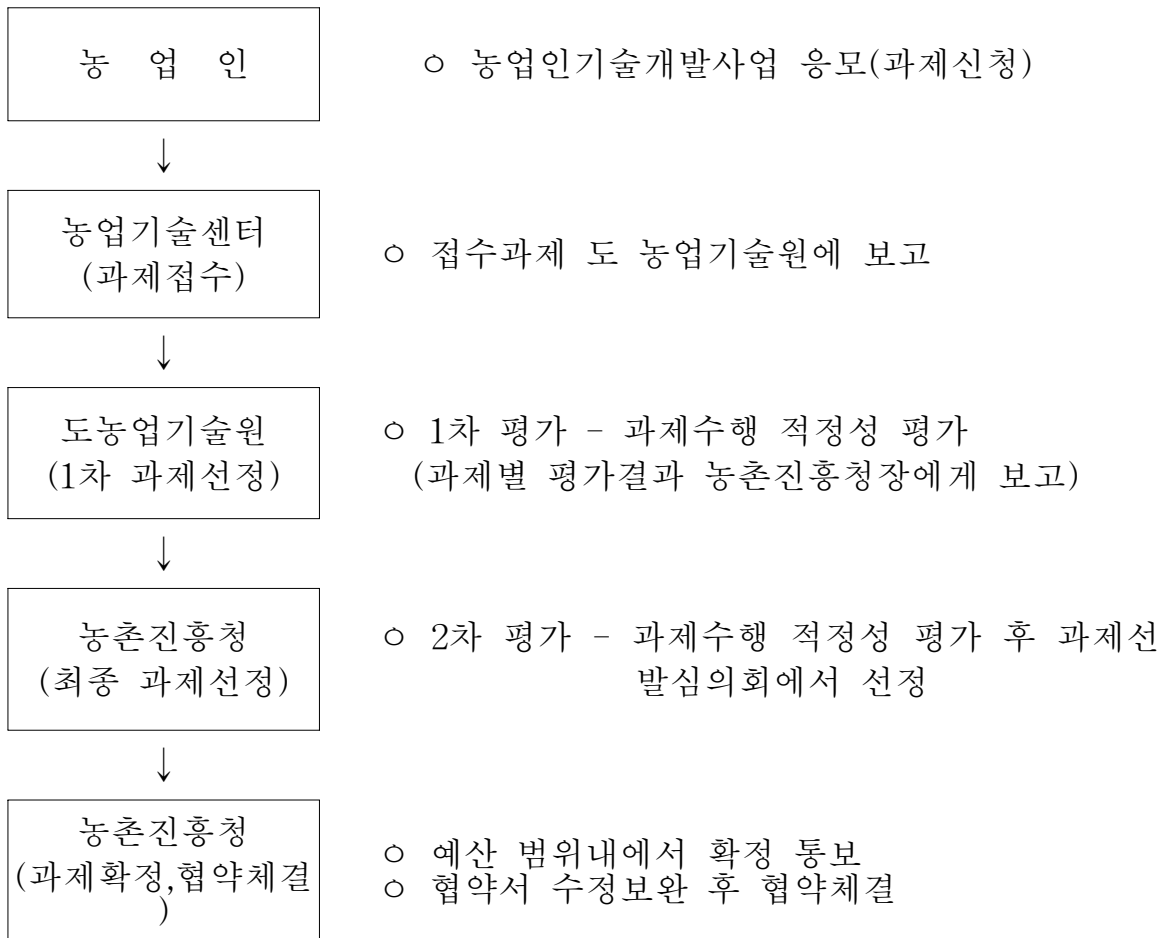
(3) 사업추진내용

- 사 업 비 : 과제당 3천만원 이내
- 연구기간 : 1~3년 이내
- 참여자격 : 시·군농업기술센터와 협동으로 새 기술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농업인

(4) 추진일정

- 공모 및 과제접수 : 연중실시, 시군농업기술센터
- 접수과제 도원 보고 : '07. 11. 7 ~ '07. 12. 3
- 도원 1차 평가 및 농진청 결과 보고 : '07. 12. 4 ~ 12.
- 농진청 평가, 중앙심의 : '07. 12. 23 ~ '08. 1.
- 최종 선발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: '08. 1. 26 ~ 2. 28

(5) 선정 심의절차



(6) 협약체결

-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촌진흥청장간에 과제수, 사업비, 개발기간 등 일괄 협약체결

(7) 연구개발비 지급

- 농촌진흥청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지급

(8) 연구개발 성과 활용

- 기술개발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중앙단위 전문위원 평가 후 유인 배부하여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
-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한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는 확대보급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개발된 기술의 성과 활용 극대화